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60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김용태·조은희·이종배

조지연 • 주호영 • 김위상

박충권 · 서천호 · 박덕흠

김성원 · 임이자 · 배준영

김재섭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돌봄 및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 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 설).

법률 제 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			
부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		
	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		
	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		
	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		
	용하려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